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동 제4선거구 출신 김 달호 의원입니다.

이렇게 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장애 차별 금지 조항과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9조의 “장애인이 차별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것”이라는 조항,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의 개정사례를 참고해,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중 “심신장애”를 “심신쇠약”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애”라는 단어의 부정적 이미지를 지양하고,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위원님 여러분!

- 우리 사회의 제도와 인식은 비장애인 위주로 이뤄져 “장애”에 대한 무의식적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본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